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524

제출연월일: 2024. 9. 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 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 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 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 신고를 한 날
-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사전심사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 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 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 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 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 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 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 <신 설> 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 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 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 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③ ~ ⑦ (생 략)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 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 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 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관세청장은 <u>제1항 본문</u>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	-
	_ -
	-
은 날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	ļ
사) ①	-
	-
	_
	_
	-
	-
	-
	-
	-
	_
	_
	-
<u><단서 삭제></u>	
② 제1항	_
	_
	-

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u>협정에서 정하는</u>
<u>바에 따라 사전심사서</u>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 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 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 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 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 (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 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 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

<u>.</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u>사전심사서</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가산세) ①

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 세로 징수한다.

-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 2. · 3. (생략)
- ② ~ ④ (생 략)

1
<u>100분의 60</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사전심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2조제1항) 및 수입자의 원산지증명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 비용 20억원 발생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출	지출수반요인 없음							
, _	소 계(A)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적용 대상 확대(제31조제1항 단 서 삭제, 제32조제1항)	△21	△21	△21	△21	△21	△105	△21
수입	가산세율을 40%에서 60% 로 상향 조정(제36조제1 항)	1	1	1	1	1	5	1
	소 계(B)	△20	△20	△20	△20	△20	△100	△20
총비	§ (A−B)	20	20	20	20	20	100	2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31조제1항(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2조제1항(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도 사 전심사 신청 및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을 허용
2	제36조제1항(가산세)	수입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부족 세액을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40% 에서 60%로 상향 조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31조제1항(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2조제1항(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0	_
2	제36조제1항(가산세)	0	_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원산지 등 조사 후 부족세액 징수에 따라 부담한 가산세가 '24년도에 동일하 게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o 산출금액: ① △21억원, ② 1억원
- ①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안 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 세수감: △ 21억원
 - 과거 원산지 등 조사 후 부족세액 징수에 따라 부담한 가산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정
- ② 가산세(안 제36조제1항)
 - ㅇ 세수증: 1억원
 - (개정 후 부족세액 중 관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액) (개정전 부족세액 중 관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액)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O 아래 개정조문은 비용수반요인 없음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 사전심사 관련 조문 정비(안 제31조제2항)

V.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원선혜	손민호	이종수	이형철 관세정책관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선혜	044-215-4473	seonhye95@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4년 이후에도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원 투명성 확대 등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나갈 예정

IV. 부대의견

O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_	_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원선혜	손민호	이종수	이형철 관세정책관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선혜	044-215-4473	seonhye95@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